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가합51347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2015. 10. 6.(피고 1., 2.에 대하여)

2015. 11. 17.(피고 3에 대하여)

판결 선고2015. 12. 22.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774,385원 및 그 중 403,930,739원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4. 1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78,393,86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178,393,86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774,385원 및 그 중 403,930,739원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B은 각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2015. 1. 1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회합10027)]의 대표이사,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1. 3. 11. D과 신용보증원금 4억 원, 신용보증기한 2012. 3. 9.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보증번호 E,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D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이 2015. 3. 6.까지로 연장되었다.

2) 피고 A, B은 D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D과 연대보증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부터 연 12%)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의 이행 및 회수 등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등

D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2014. 12. 2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2. 12.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403,930,739원[원금 400,000,000원 + 이자 3,930,739원($=400,000,000\text{원} \times 4.27\% \times 84/365$)]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2,157,066원을 지출하고 그 중 313,420원을 회수하여, 현재 1,843,646원이 남아있다.

라. 별지 기재 부동산의 처분 등

피고 A은 2014. 12. 5. 피고 C에게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4. 12. 12. 접수 제1404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A,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시 영통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구상금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774,385원(=대위변제금 403,930,739원 + 법적절차비용 1,843,64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03,930,739원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5. 6. 2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위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고의 사후구상금채권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1. 3. 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인 2014. 7. 1., 2014. 11. 17. 주채무자인 D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F 1동 105호 및 같은 지상 1동 106호 각 부동산에 관해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코인스와 대영전기

주식회사의 각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고(인천지방법원 2014카합913호,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6247호), 2014. 10. 24.에는 주식회사 코인스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G)가 개시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사후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후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A의 유일한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인 피고 A 및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 C의 선의 항변 피고 C은 딸의 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고 A과는

친인척관계 등이 없어 피고 A의 신용상태를 알 수 없었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없는 사실, 피고 C은 2014. 12. 10. 피고 A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2014. 12. 15. 피고 A의 지시에 따라 피고 A의 부(父) H에게 잔금

168,393,864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 A이 2014. 12. 12.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무인 321,606,136원을 변제하고 위 은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384,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C으로 하는 태안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①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받기 이전인 2014. 12.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잔금을 모두 지급 받기 이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며, 그렇게 해야 하는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법무사의 입회하에 체결되었다.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알게 되어 구입한 경위를 알 수 없다.

③ 피고 C은 딸의 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의 딸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이미 성인인 딸을 위해 아버지인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준 경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피고 C의 딸들은 각 1977년, 1978년, 1979년 생이다).

4) 취소 및 원상회복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 받은 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년 8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5억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321,606,136원을 공제하면 178,393,864원(=

500,000,000원 - 321,606,136원)이 남는다.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보다 적으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178,393,86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178,393,86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판사김연하

판사김재남

판사나재영

별지